
오픈뱅킹 전면시행

2019. 12. 18.



금융위원회



금융감독원



금융결제원



금융보안원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추진배경 | 1 |
| [참고 1] 오픈뱅킹 해외사례 | 2 |
| 2. 추진경과 | 3 |
| 3. 오픈뱅킹 개요 | 4 |
| [참고 2] 한국형 Open Banking의 특징 | 7 |
| 4. 시범실시(10.30.~12.17.) 결과 | 8 |
| 5. 전면시행(12.18.) 주요내용 | 10 |
| [참고 3] 오픈뱅킹 전면시행 참여 이용기관 | 11 |
| 6. 기대효과 | 15 |
| 7. 향후 계획 | 17 |

1 추진배경

-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금융혁신의 핵심기반으로 금융, 실물,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

* 특히, IT·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·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

- 주요국들은 은행 외 핀테크 기업 등에게 은행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오픈뱅킹을 통해 결제 인프라를 전면 혁신 중

※ 【참고 1 : 오픈뱅킹 해외사례】 참조

- 반면, 우리나라는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 내재

- ①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* 필요 →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제약된 “폐쇄적 구조”

*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할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

- ② 제휴시 높은 이용료* 부과 → 핀테크 기업의 “과도한 비용부담”

* 1건당 약 400~500원 내외 수준(평균결제금액 3만원 가정시 약 1.5% 수준)

- ③ 은행도 자기고객에 한해 결제·송금 → “플랫폼으로 성장 제한”

- ④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→ “금융소비자 불편”

- 이에 오픈뱅킹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의 개방과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」 발표(19.2.25.)

-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0.30일 은행권부터 시범실시에 착수하여 금융권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비스가 안착되는 모습

- 시범실시 기간 동안 시스템 기능·보안 개선 및 핀테크 업계의 준비를 거쳐 금일 9시부터 오픈뱅킹을 전면시행

- 향후에는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보다 광범위한 금융혁신 촉발을 위해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→ “오픈 파이낸스”

참고 1

오픈뱅킹 해외사례

-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, 지침 등을 개정하여 제도를 시행 중

| 국가명 | 오픈뱅킹 관련 정책 |
|------|--|
| EU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SD2(Payment Services Directive 2) 도입('18.1월) ✓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○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에서는 '개인정보이동권'을 도입하여 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('18.5월) |
| 영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('18.1월) ✓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, 타은행 계좌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 →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 ○ 英OBIE(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)는 기술사양, 보안 등 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.0 발표('18.9월) ※ 英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'19.10월 1.8억건으로 전년 동월(1,390만건)대비 약 13배 성장 |
| 호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무부에서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 발표('18.2월) ✓ (4대 주요은행) '19.7월 신용·직불카드 및 예금·거래계좌부터 시작하여 '20.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확대 예정 ✓ (기타 은행) 12개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, '22.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 공개 예정 |
| 일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API 제공 등 의무화('18.6월) ✓ 핀테크 기업에 대한 API 제공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해 API 제공 의무화 (법 시행 후 2년내 은행 API 구축 노력 명시) ⇒ 日당국, '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 완료 예상 |
| 싱가포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('16년) ✓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* 추진 중 * 은행(Citi, OCBC 등), 지급결제업체(NETS) 등이 거래내역 등 약 310여종 API 개방 중이며, MAS도 감독 관련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 부문 발전 도모 |
| 홍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콩금융관리국에서 'Open API Framework'를 마련('18.7월) ✓ 단계별* 오픈뱅킹 추진 중 * 1단계(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), 2단계(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), 3단계(계좌정보), 4단계(거래처리)로 구분 |
| 미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 규정 없이 시장 자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오픈뱅킹 추진 |

2 추진 경과

① '16.8월 공동 오픈플랫폼 도입·운영

- 오픈뱅킹의 전 단계로 공동 오픈플랫폼이 운영되었으나, 제한된 범위의 이용기관*, 높은 이용료**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

*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, 제공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등

** 기존 이체 API는 이용료가 건당 400~500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

② 오픈뱅킹 도입 발표('19.2.25.)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(3~6월)

- 은행권 합의를 거쳐 개방형 공동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」 발표(금융지주사 간담회)

| 기본원칙 | 추진방안 |
|------------|--|
| ① 참여대상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이용기관) 모든 핀테크 사업자 + 은행 ② (제공기관) 일반은행(16개) → 인터넷전문은행(2개) 추가 |
| ② 이용료 조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현행 대비 1/10 수준으로 조정 ② 중소형 핀테크 기업은 1/20 수준까지 적용가능 |
| ③ 시스템 운영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한 금결원 전산시스템 탄력적 증설 ② 운영시간 확대(연중무휴 00:05~23:55), 24시간 장애대응 체계 마련 ③ 보안성 기준 마련 및 이용기관 보안수준별 운영방식 차등 적용 |

-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* 마련

* 오픈뱅킹 참여(제공, 이용) 기관, 이용 수수료 수준, 추진 일정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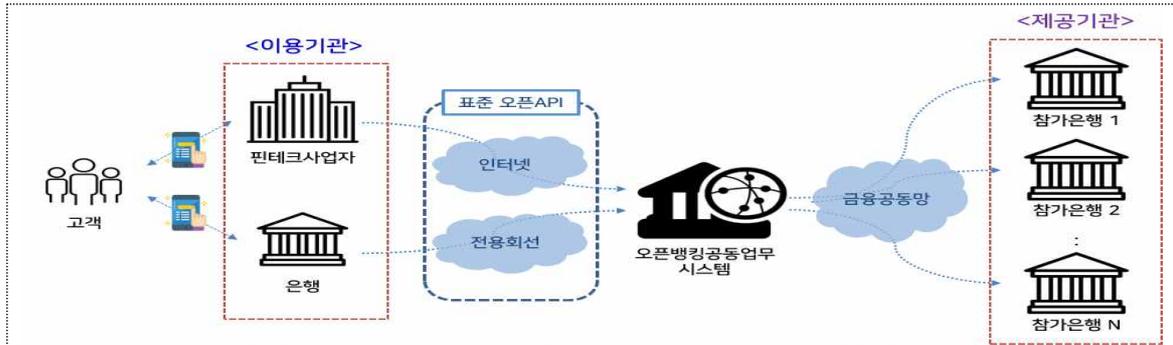
③ 오픈뱅킹 시범실시(10.30.) 및 전면시행(12.18.) 준비

-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
- 오픈뱅킹 운영규약 마련 및 보안점검 등 이용계약 체결 준비
- 오픈뱅킹 은행권 대고객 시범서비스 실시(10.30.~12.17.)

3 오픈뱅킹 개요

① (구조)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

-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참가은행(18개)과 연결되어 모든 은행의 결제망 이용



② (참여기관)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

- 은행이 제공기관으로서 일방적인 정보제공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용기관으로도 참가하여 오픈뱅킹을 적극 주도
-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를 허용하여 오픈뱅킹 시스템의 범용성을 높이고 지급결제 산업을 활성화

③ (제공서비스) 이체,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

- 외국의 오픈뱅킹은 데이터 내역이 전송되는 조회형 API 중심이나 한국의 경우 입출금 기능이 실행되는 실행형 API까지 포함

| 구분 | 세부 내용 |
|----|---|
| 조회 | ① 잔액조회 : 사용자 본인계좌의 잔액 조회 |
| | ② 거래내역조회 : 사용자 본인계좌 입출금내역 조회 |
| | ③ 계좌실명조회 : 이용기관이 사용자 계좌의 유효성 및 예금주명 조회 |
| | ④ 송금인정보조회 :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한 사용자명 및 송금계좌번호 조회 |
| 이체 | ⑤ 출금이체 : 사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 |
| | ⑥ 입금이체 : 이용기관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자 계좌로 입금 |

④ (수수료) 기존 대비 1/10 수준(중소형은 1/20)으로 조정

-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기존 대비 1/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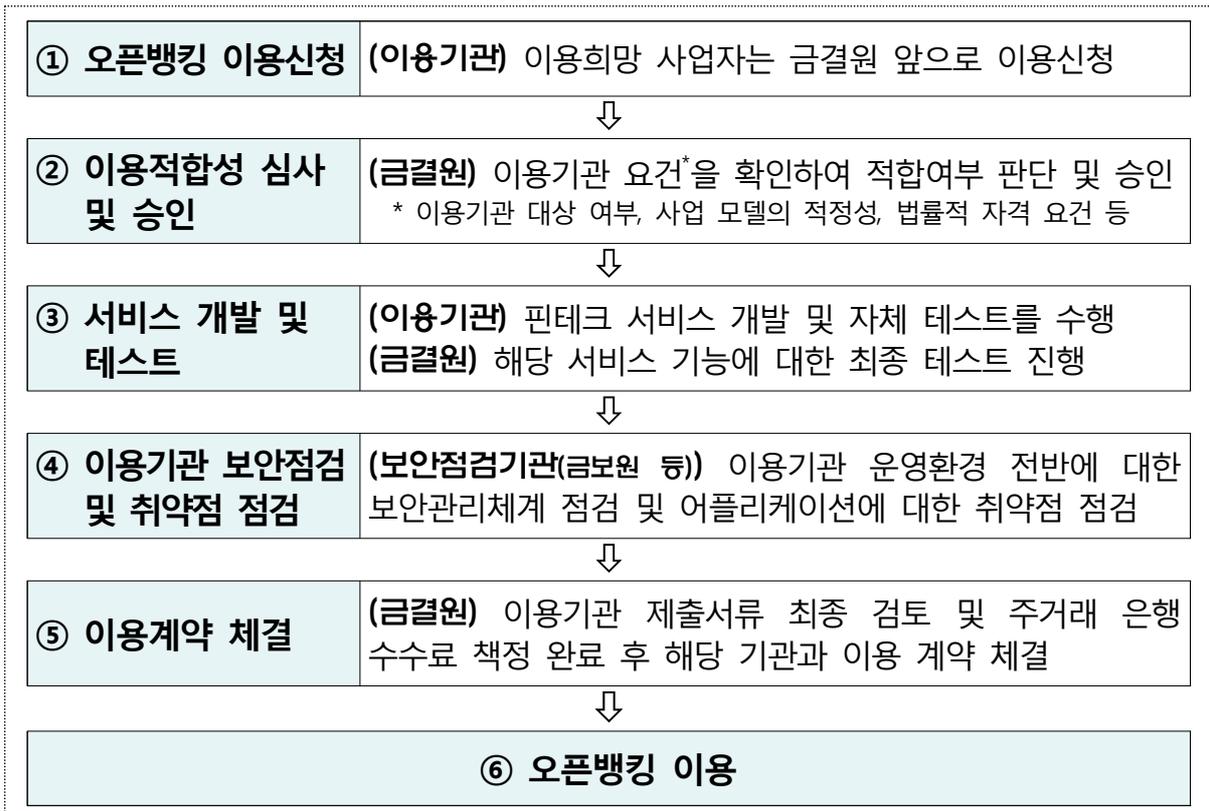
| 업 무 | | 구 분 | 현행 비용 | 기본비용 (대형) | 경감비용 (중소형*)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조회 | 잔액조회 | | 10원 | 10원 | 5원 |
| | 거래내역조회 | | 50원 | 30원 | 20원 |
| | 계좌실명조회 | | 100원 | 50원 | 30원 |
| | 송금인정보조회 | | 300원 | 50원 | 30원 |
| 이체 | 출금이체 | | 500원 | 50원 | 30원 |
| | 입금이체 | | 400원 | 40원 | 20원 |

* 경감비용 적용기준 : (이체) 월 거래금액 100억원 ↓ & (조회) 월 거래건수 10만건 ↓

⑤ (이용절차) 이용적합성 심사,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

- 이용적합성 심사, 서비스 기능테스트 및 보안성 점검 등 사전검증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

[오픈뱅킹 이용절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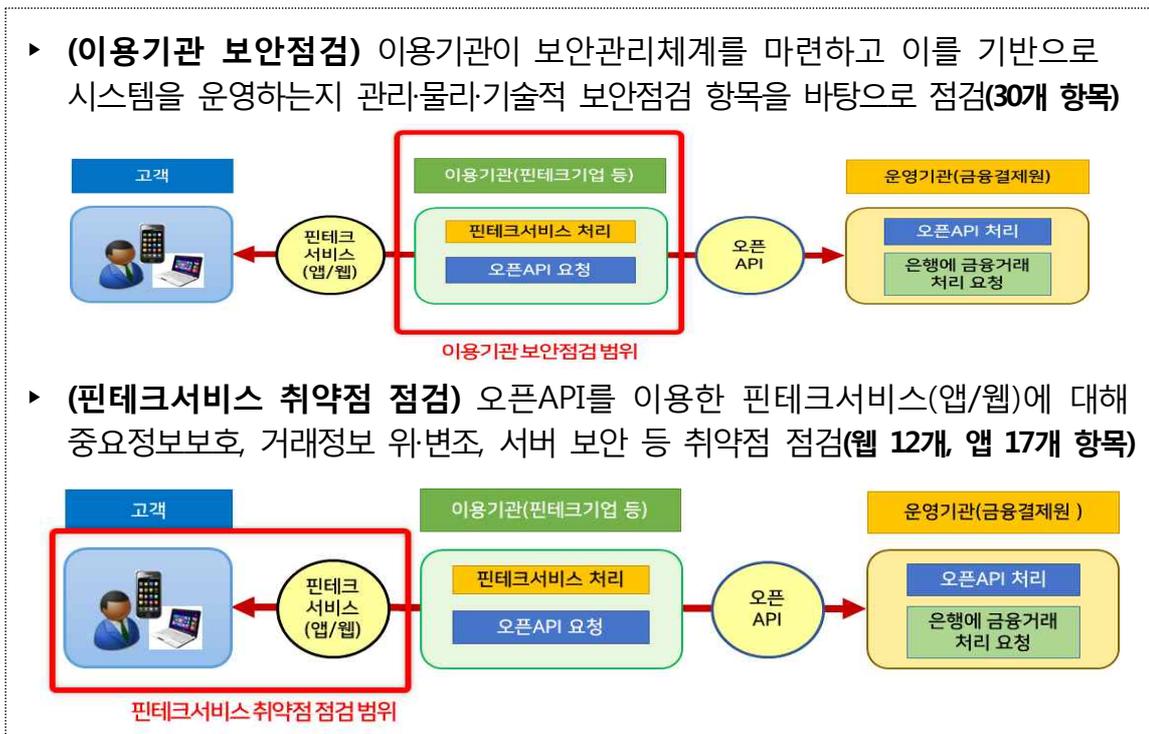


⑥ (안정성 및 보안)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

-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*,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(FDS)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금융결제원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

* (기존 저장용량) 4TB → (증설 후) 60TB

- 금융보안원 점검(①이용기관 점검, ②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)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보안성을 철저하게 검증



⑦ (소비자보호)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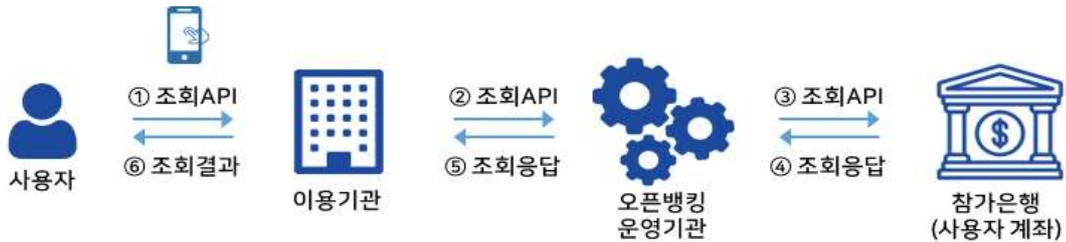
- 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 이체 한도 1천만원 설정(추후 운영상황에 따라 상향여부 검토)

※ 예) A은행앱에서 1천만원 출금시, 당일 B은행앱에서 추가 출금 불가

-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(또는 금융회사)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수단 확보를 위해 이용기관 보증보험* 가입 의무화

* 재무건전성, 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일 출금한도의 200%에서 조정 (최저 100%, 최대 300%)

- **(공동 플랫폼)** 개별계약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달리 운영기관(금융결제원)에서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을 중계
 -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도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접속으로 전체 참가은행(18개)이 연결될 수 있는 **공동형 플랫폼**



- **(API 유형)** 영국, 호주 등은 단순 **조회형 API**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운영하고 있으나, 우리나라는 입출금 기능의 **실행형 API**까지 포함
- **(은행의 지위)** 은행은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참여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**오픈뱅킹 적극 주도**
- **(참가기관 수)** 영국(9개 은행), 호주(4개 은행) 등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참가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**모든 은행(18개) 참가**
- **(적극행정)** API 의무개방을 규정한 법령 마련 이전에 은행 간 협약에 근거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**선제적으로 제공**

< 오픈뱅킹 관련 국가별 규정(출처: 바젤 은행감독위원회, '19.11월) >

| 구 분 | 해당 국가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관련 법령에서 은행이 허가된 제3자와 정보공유를 하도록 요구하는 오픈뱅킹 규정 | EU, 멕시코, 남아공, 인도, 태국 |
| 오픈 뱅킹 지침 발행(정보 공유 권장) | 한국, 홍콩, 싱가포르 |
| 오픈 뱅킹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 | 호주, 브라질, 러시아 |
| 오픈 뱅킹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 | 캐나다, 터키 |
| 시장자율(오픈뱅킹 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) | 미국, 중국, 아르헨티나 |

- **(데이터 산업과의 연계)**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시 결제와 데이터를 연계한 오픈뱅킹 운영 가능

4 시범실시(10.30.~12.17.) 결과

① (개요) 10.30.(수) 10개 은행이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전면시행 전 고객인지도 제고 및 준비사항 점검·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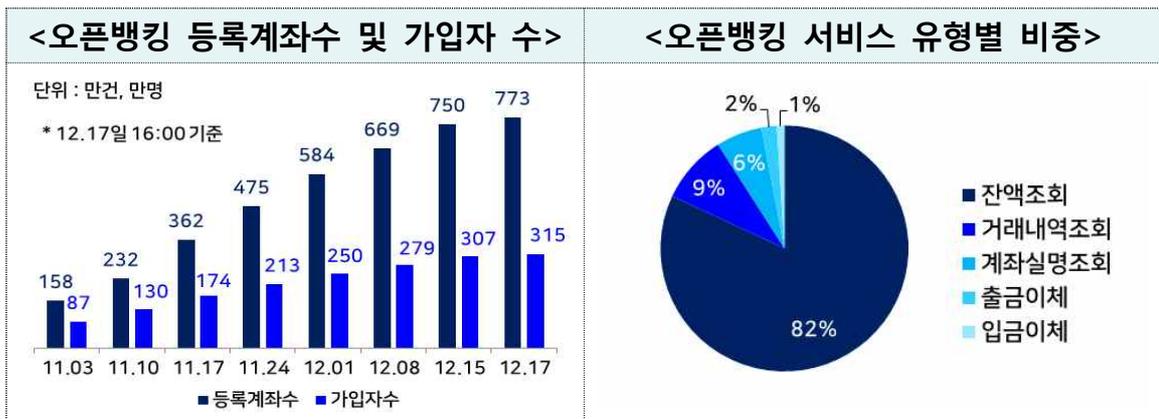
○ 제공기관(참가은행)으로서의 역할은 18개 모든 은행이 실시

※ (10.30.) 국민, 신한 우리, 기업, 농협, 하나, 부산, 경남, 전북, 제주은행 참여
(11.18.) 광주은행, (11.29.) 대구은행, (12.16.) SC제일은행, 수협은행

② (결과) 약 50일(10.30일~12.17일)간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하여 773만 계좌를 등록, 8,392만 건(API)을 이용

○ 시범실시 첫날 51만명 가입한 이후 일평균 주중 8만명, 주말 3만명이 가입하여 1인당 평균 2.5개의 계좌를 등록

○ 서비스는 잔액조회(82%), 거래내역조회(9%), 계좌실명조회(6%), 출금이체(2%) 순으로 이용되었음



【사례 1 : 영국 오픈뱅킹('18.1월 도입)】

○ 영국은 도입('18.1월) 후 4개월이 지난 시점('18.5월)에서 일평균 약 3.3만건이 이용되었으나 국내는 약 50일간 일평균 171만건 이용되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수준

※ 다만, 영국은 9대 주요 은행에 한정된 제공기관이 잔액정보, 거래기록 정보 등 조회 중심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한국과 일률적 비교는 어려움

< 영국 오픈뱅킹 월간 일평균 API 이용건수 추이 (단위 : 만건) >

| 구분 | '18. 1월 | '18. 5월 | '18. 11월 | '19. 5월 | '19. 8월 | '19.10월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이용건수 | 서비스개시 | 3.3 | 58.3 | 192 | 356 | 602 |

③ **(의의)** 금융권 및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비스가 안착되는 가운데, 신속한 기능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서비스 제공

① **(계좌등록)** 7개 은행 인터넷뱅킹·모바일앱과 어카운트인포가 연계* 되어 계좌 조회 후 등록가능(11.11.)

* 12.17.부터 16개 은행앱과 연계되며, 산업 및 카카오뱅크는 '20년 상반기 중 연계예정

<계좌등록 편의>



② **(수취계좌확인)**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출금내역에 이용기관과 수취인명*을 같이 기재(12.7.)

* (기존) □□은행오픈뱅킹 → (개선) □□오픈_홍길동

<수취계좌 확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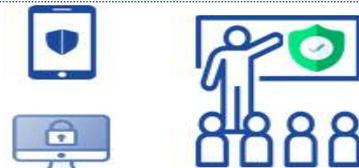
③ **(FDS 탐지 강화)** 이상거래 차단을 위해 FDS 탐지결과를 실시간으로 (10분 단위)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(12.7.)

<이상거래 탐지>



④ **(보안대응 모의훈련)** 오픈뱅킹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IT리스크 합동 훈련실시(12.13.)

<보안대응 훈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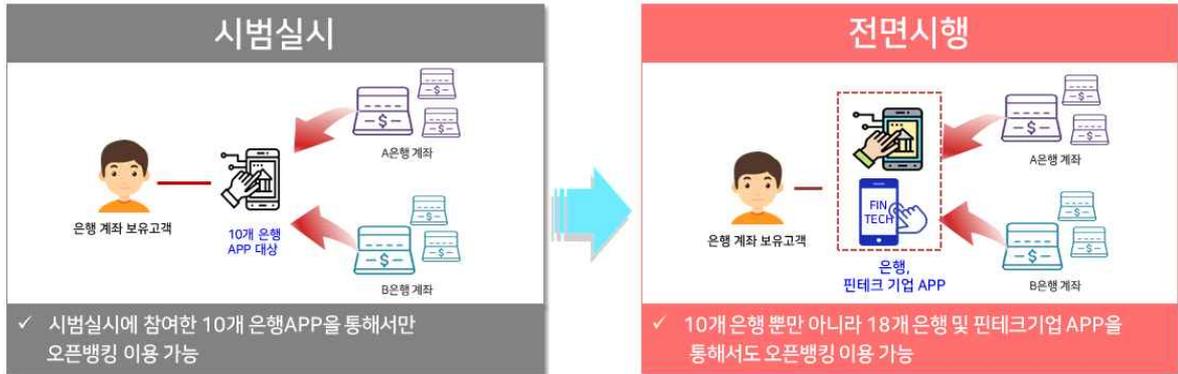


【사례 2 : A은행의 오픈뱅킹 시범운영 미시분석】

- ▶ **(연령대)** A은행 등록 오픈뱅킹 고객의 30대가 31%, 40대가 26%, 20대가 22% 등으로 이용자의 과반이 3·40대 이용자
- ▶ **(고객군)** 이용자의 과반이 직장인(51%)으로 개인사업자는 10% 이하
- ▶ **(건당 거래금액)** 건당 출금한도가 1천만원임에도 건당 거래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 송금 이용이 대부분
- ▶ **(거래빈도)** 인당 이체 빈도는 1건 거래 비중이 60% 이상으로 이체보다 조회 목적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

5 전면시행(12.18.) 추진내용

① (개요) 12.18일 9시부터 총 47개 이용기관이 서비스 제공



○ 12.17일까지 이용을 신청한 기관은 177개*로 이 중 준비를 마친 은행 16개, 핀테크 기업 31개 등 47개 이용기관이 우선 참여

* 은행 18개, 핀테크사업자 133개, 기존 오픈플랫폼 실시기관 26개

- 47개사는 간편송금 분야(은행 포함 22개사), 해외송금(13개사), 중개서비스(6개사), 자산관리(5개사) 등으로 구성

< 이용신청 및 승인현황('19.12.17일 기준) >

| 구 분 | 신청 | 승인 | 기능Test | 전면시행 참여 기관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----|
| | | | | 기관수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은행 | 18개 | — | — | 16개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</th> <th>개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간편송금</td> <td>22개</td> </tr> <tr> <td>해외송금</td> <td>13개</td> </tr> <tr> <td>중개서비스</td> <td>6개</td> </tr> <tr> <td>자산관리</td> <td>5개</td> </tr> <tr> <td>쇼핑몰</td> <td>1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분야 | 개수 | 간편송금 | 22개 | 해외송금 | 13개 | 중개서비스 | 6개 | 자산관리 | 5개 | 쇼핑몰 | 1개 |
| 분야 | 개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간편송금 | 22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외송금 | 13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개서비스 | 6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자산관리 | 5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쇼핑몰 | 1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핀테크사업자 | 133개 | 95개 | 12개 | 7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존 오픈플랫폼 기관 | 26개 | — | — | 24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합 계 | 177개 | 95개 | 12개 | 47개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○ 16개 은행이 이용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, 나머지 2개 은행*은 내년 상반기 중 참여 예정

* 씨티은행('20.1.7.), 카카오뱅크('20.上)

○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보안점검 등을 완료한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 예정

참고 3

오픈뱅킹 전면시행 참여 이용기관

| No | 구분 | 기관명 | 분야 | 사업모델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1 ~ 16 | 은행 (16) | 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제일, 하나, 기업, 국민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케이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17 | 핀테크 기업 (7) | 비바리퍼블리카 (토스)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18 | | 핑크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19 | | 카카오페이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20 | | 디셈버앤컴퍼니 (핀트) | 자산관리 | 금융투자서비스 |
| 21 | | 세틀뱅크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22 | | 레이니스트 (뱅크샐러드) | 자산관리 | 자산관리플랫폼 |
| 23 | | 쿠콘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24 | 기존 오픈플랫폼 이용기관 (24) | 뱅크웨어글로벌 | 자산관리 | 모임 회비관리 |
| 25 | | 센트비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26 | | 바로SVC | 중개서비스 | 계좌 유효성 검증 |
| 27 | | 티소프트 | 중개서비스 | 비대면 본인확인 |
| 28 | | 인스타페이 | 간편송금/결제 | 간편송금/결제 |
| 29 | | 오투이투 | 중개서비스 | 배달기사 수행료 납부 |
| 30 | | 다노 | 쇼핑몰 | 쇼핑몰 환불금 납부 |
| 31 | | 핑거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32 | | 적시타 | 자산관리 | 계좌 통합조회 |
| 33 | | 더재무컨설팅 | 자산관리 | 자산관리플랫폼 |
| 34 | | 지머니트랜스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35 | | 엔애피코리아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36 | | 플리토 | 중개서비스 | 번역료 정산 |
| 37 | | 이나인페이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38 | | 핀샷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39 | | 스타레밋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0 | | 시스퀘어코리아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1 | |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2 | | 한패스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3 | | 씨앤비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4 | | 오지큐 | 중개서비스 | 디지털 콘텐츠 마켓 |
| 45 | | 모바일통 | 해외송금 | 모바일 환전 서비스 |
| 46 | | 인터콜 | 해외송금 | 소액해외송금 |
| 47 | | 풀러스 | 중개서비스 | 카풀중개서비스 |

2 이용기관별 서비스 내용

은 행

- 시범실시 당일 **오픈뱅킹 이용기관**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은행도 추가 참여*할 예정이며 제공되는 오픈뱅킹 기본 서비스는 동일
- * 광주(11.18.), 대구(11.29.), SC제일(12.16.), 수협(12.16.), 케이(12.18.), 산업(12.18.)
- 시범실시 중에는 은행 간 경쟁이었으나 전면시행 후 핀테크 기업과도 경쟁할 예정으로 특화서비스 출시에 더욱 집중할 전망
- 은행별로 오픈뱅킹 전면시행에 맞춰 **우대금리 상품, 납부기일·자산관리**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

| ① 자금집금 서비스 | ② 오픈뱅킹 특화상품 |
|---|--|
|  <p>여러 은행 계좌를 한번에 이체하여 자금모으기</p> |  <p>오픈뱅킹 특화 예금상품 출시 (오픈뱅킹 통한 상품 가입 우대 금리 제공)</p> |
| ③ 통합자산관리 | ④ 손쉬운 환전 |
|  <p>오픈뱅킹 등록 타행계좌를 결합한 자산관리서비스 및 맞춤형 상품추천</p> |  <p>다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집금하여 환전·외화 송금</p> |
| ⑤ 간편결제 충전 | ⑥ 더치페이 |
|  <p>모바일 간편결제(페이서비스) 이용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손쉬운 충전·결제</p> |  <p>여러 타행계좌를 활용하여 더치페이</p> |
| ⑦ 결제대금 선결제 | ⑧ 지능형 납부기일관리 |
|  <p>오픈뱅킹 타행출금 기능을 이용한 결제대금 선결제 기능 제공</p> |  <p>대출이자 납부일에 당행계좌 잔액 부족시 타행계좌 출금으로 연체 방지</p>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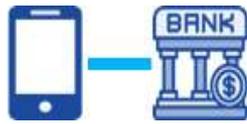
핀테크 기업

- 핀테크 기업의 고객들은 12.18일부터 핀테크 앱에 접속하여
오픈뱅킹 동의를 거친 후 이용 가능
- 오픈뱅킹 이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핀테크 기업의 기존
제공 서비스, 핀테크 앱의 성격별로 다양하게 나타남
 - i)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기제공한 경우 (예: 토스, 카카오페이)
 -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/10 수준으로 절감되어
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

【사례 3 : 주요 핀테크 기업 고객 수수료 정책방향 ('19.6월말 기준)】

| 기업명 | 고객 수수료 정책 방향 | 연간 펌뱅킹 수수료 (핀테크 기업 부담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Toss | (타 계좌로 송금) 10회/월 무료(이후 500원/건) | 약 600억원 |
| 카카오페이 | ⇒ 무료송금 건수 확대 예정 | 약 400억원 |

- ii) 일부 은행과의 제휴만 이루어졌던 경우 (예: 핀크,뱅크샐러드)
 -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연결이
가능해져 비제휴은행 계좌가 있었던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가능
 - 모든 은행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에는 제공이
어려웠던 신규상품도 활발하게 개발·출시 가능

| | |
|--|--|
| ① 월급 분할 송금  월급일 한번의 이체만으로 여러 은행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 | ② 전 은행 계좌 연결 체크카드  1개의 계좌에서만 결제되는 기존 체크카드의 한계를 넘어선 체크카드 출시 |
| ③ 핀테크 공동계좌  모임계좌와 같은 핀테크 특화 선불전자 지급수단 공동 운영 | ④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가능  기존에 제휴가 어려웠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조회 가능 |

iii) 출금·이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(예: 핀트)

- 출금·이체가 불가능했던 핀테크앱의 경우 별도 송금앱 접속 없이 하나의 앱에서 자금집금 후 one-stop 금융거래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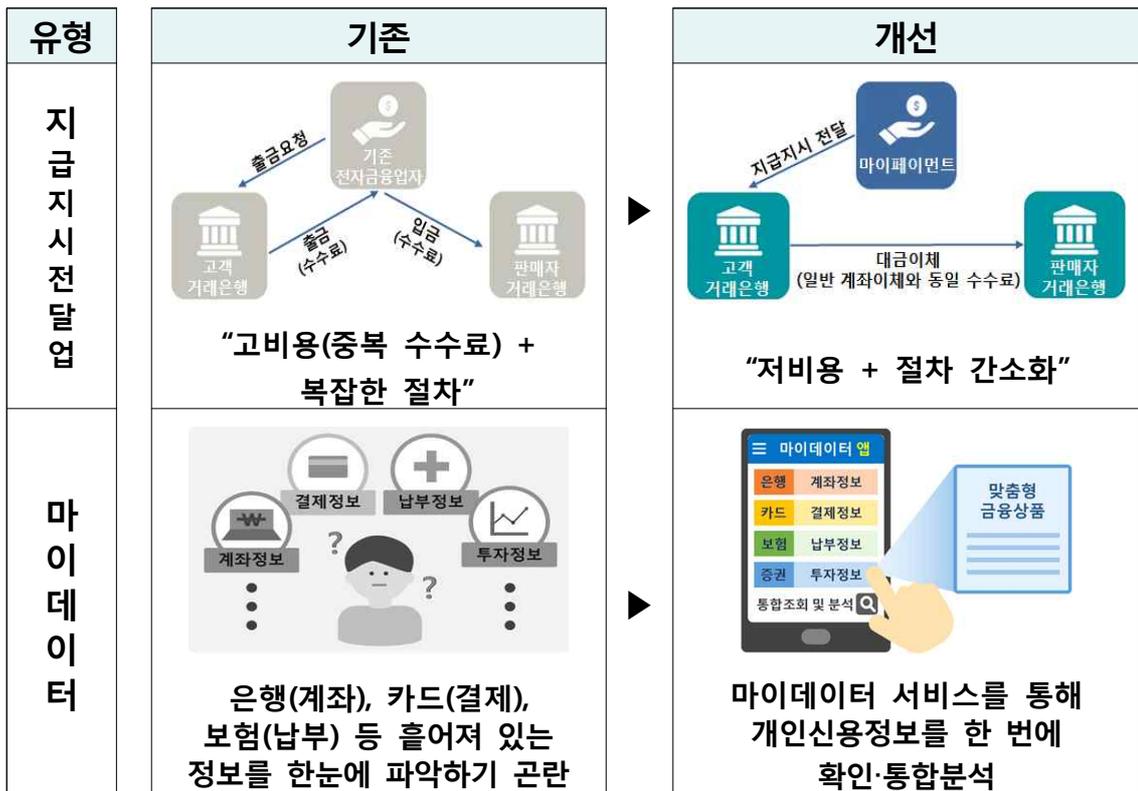
< 특화서비스 예시 : One App, One-stop 투자서비스 >



신규 Player

○ 향후 전자금융거래법,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지시전달업자*, 마이데이터** 사업자 도입시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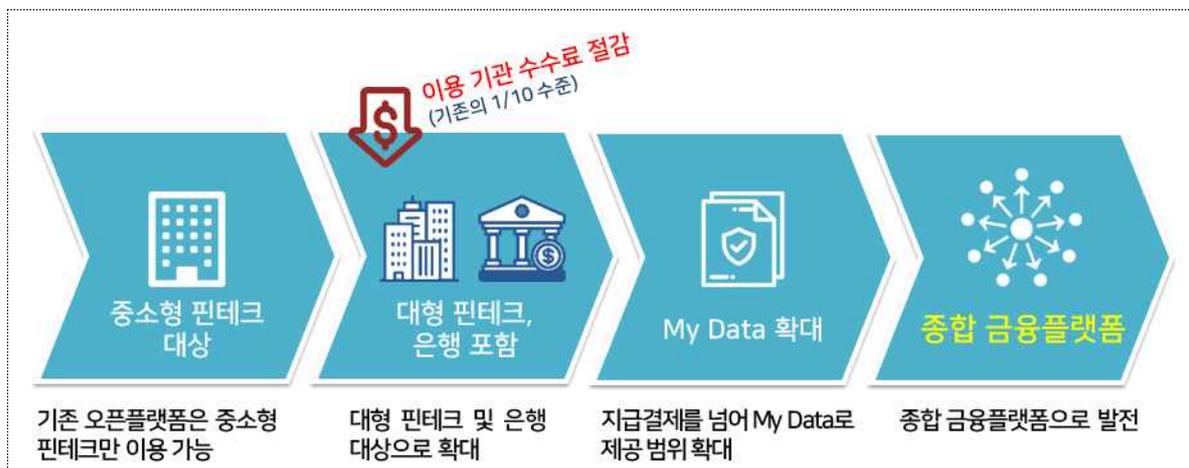
- *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
- **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
- 특히, 마이데이터 산업과 본격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서비스 가능



6 기대효과

① 금융산업 전반 : 은행과 핀테크 간 장벽이 사라져 경쟁 가속화

- 오픈뱅킹은 단순한 결제망 개방을 넘어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시장구조 재편 및 금융산업의 혁신으로 연결
 - 다양한 금융플랫폼이 등장·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, 금융산업 자체의 부가가치 창출 여력도 확대
-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경제 전반의 거래비용이 절감



② 핀테크 기업 :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져 금융혁신이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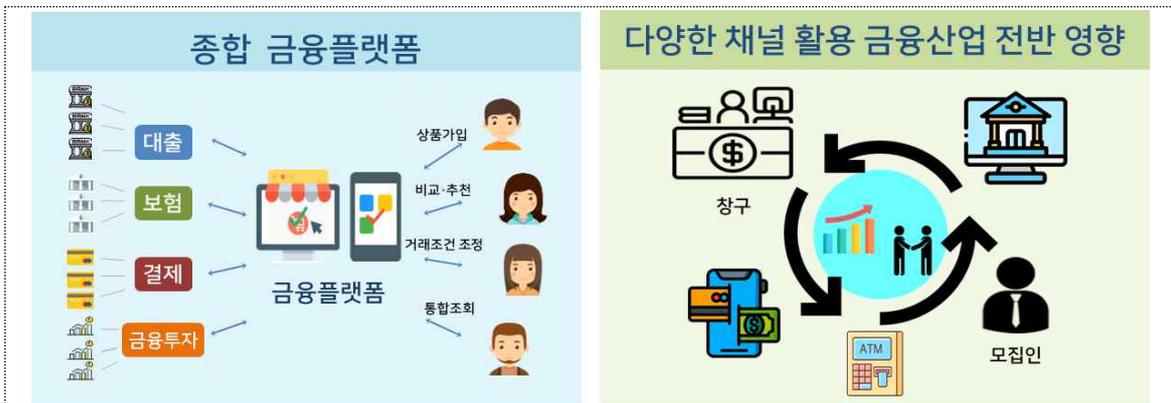
- 은행권 의존 없이*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 및 혁신적 서비스 출시 가능

* 오픈뱅킹 단일접속 만으로 18개 은행과 연결되는 개방형 인프라



③ 은행 :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

-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송금, 간편결제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핀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 가능
- 동시에 핀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**뱅킹(banking as a platform)**으로 전환
-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획득 및 유지, 금융상품 개발, 유통 등 금융 전 분야에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



④ 금융소비자 : One 앱, All 금융서비스

- 금융플랫폼 출현으로 단순 결제·송금을 넘어 대출, 지출분석, 상품 비교 구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One-stop으로 이용
- 특히, 오픈뱅킹을 통한 손쉬운 상품 비교가 가능해져 간편한 자산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자산형성 기회가 크게 확대



7 향후 계획

① 오픈뱅킹의 안정적 운영 뒷받침(계속)

- 이용신청 후 절차를 진행 중인 핀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 등 후속 절차 적극 지원

② 오픈 파이낸스를 향한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('20년 上)

- 연구용역을 통해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
 - i) (참가기관 추가)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확대하여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추가 참여여부 검토
 - ii) (제공기능 다양화) 현재 예·적금 등 보유자산 측면 조회·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*하는 방안 검토
 - * 예시)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대출·연금 관련 API 기능 추가 등 검토
 - iii) (채널 확대) 모바일·인터넷 외 ATM 기기,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 검토
 - iv) (제도 간 연계)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새로운 금융산업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
 - v) (소비자 편의 확대) 오픈뱅킹을 통한 휴면계좌 활성화, 가상계좌 등 이용가능 계좌 확대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추진

③ 오픈뱅킹 안정성 확보 ('20년 下)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
 -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(API) 제공 의무화,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
 - 또한, 금융 인프라로서 오픈뱅킹의 신뢰성·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관리·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